

의안번호	제 407 호
의 결 연 월 일	2012년 월 일 (제 316 회)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2년 11월 2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07
----------	-----

제출연월일 : 2012년 11월 2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2012. 12. 31.로 만료되는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현행 감면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사항에 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며 관련법령 표기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경감율 명시(안 제3조)
 - 도청소재지인 시지역내 부동산 취득 : 100분의 25 경감
 - 이외 지역에서 부동산 취득 : 100분의 50 경감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경감율을 조례로 규정
- 기업도시 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의 추정조건 추가 신설 (안 제10조)
 - 3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등에도 추정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감면 삭제 (안 제12조)
 - 감면기간이 업무개시일(2010. 11. 3)부터 2년 이내로서 기간 만료
- 조문 번호 변경 및 일부 자구 정비 등
- 감면조례 적용시한 연장
 - 적용시한을 2015. 12. 31.까지로 연장(3년)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붙임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를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3조(종전의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에 따라 종교단체(「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1.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조를 제2조로 하고, 제2조(종전 제4조)제1항 중 “장애인이 본인 또는” 을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 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로 하며,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를 “장애인의 형제·자매가 장애인과 공동명

의로 등록하여” 로 한다.

제5조를 제4조로 하고, 제4조(종전 제5조) 중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로 한다.

제6조를 제5조로 하고, 제5조(종전 제6조)제1항 중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를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제16조제1항” 을 “제19조의3제1항” 으로 하며, 제3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 를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 로 한다.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0조로 하고, 제9조(종전 제10조)제1항과 제2항 중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를 각각 “충청북도내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로 하며, 제10조(종전 제11조)의 조 제목 중 “취득세 감면” 을 “감면”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 중 “도세” 를 “충청북도 도세(이하 “도세” 라 한다)” 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제4조” 를 “제2조” 로 한다.

제16조 및 제18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를 각각 “법” 으로 한다.

충청북도조례 제3441호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2. 12. 31.까지” 를 “ 2015년 12월 31일까지” 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조의 규정은 법 제38조제4항에서 정한 적용시한을 따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
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 -----.</p>
<p>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① 종교단체(「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p> <p>1.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p> <p>2. 제1호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②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p>	<p>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에 따라 종교단체(「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p> <p>1.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p> <p>2. 제1호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제6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1. (생략)
2.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3.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② (생략)

제7조(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생략)

제8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

1. (현행과 같음)
2. ----- 제19조의3제1항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7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p>감면) (본문 생략)</p> <p>1. ~ 4. (생략)</p> <p>제9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생략)</p> <p>제10조(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도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가스관 제외, 사업허가를 받기 전 6개월 이내에 취득한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 추정한다.</p> <p>②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가스관 제외)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 추정한다.</p> <p>제11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p>	<p>감면) (본문 현행과 같음)</p> <p>1. ~ 4. (생략)</p> <p>제8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p> <p>제9조(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 충청북도내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 ----- ----- ----- -----.</p> <p>② ----- 충청북도내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 -----.</p> <p>제10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p>
--	--

득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폐업일 또는 폐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고, 제5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1. ~ 5. (생략)

6. <신설>

③ (생략)

제12조(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주직

원에 대한 감면) ① 수도권에서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10호의 기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보건연구원을 말한다)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일 또는 업무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1

득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폐업일 또는 폐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고, 제5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면제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1,000분의 750을 경감

3.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1,000분의 625를 경감

② 제1항에서 "1가구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충청북도 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13조(사무처리의 위임) -----
----- 충청북도 도세(이하 “도세” 라 한다) -----

제15조(감면신청 등) ①·② (생략)

③이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
본다.

④ (생략)

제1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를 준용한다.

제18조(중복감면의 배제) -----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감면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조 -----

-----.

④ (생략)

제16조(감면자료의 제출) -----

----- 법 -----
-----.

제18조(중복감면의 배제) -----

----- 법 -----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97조의2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1.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3.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는 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

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감면한다.

※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까지로 개정 추진중(입법예고 종료 '12. 9. 19)

제96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제99조(감면자료의 제출)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을 세척·박피(薄皮)·절단 등 단순가공하거나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및 민속예술품(이하 "농산물가공품"이라 한다)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농산물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

판매점의 설치·운영, 수출의 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4(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3호나목에 따른 수산가공품 (이하 "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2. 수산물 가공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3.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포장 자재·시설 및 자동화 장비의 매입
4.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2012. 12. 31.로 만료되는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며 현행 감면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사항에 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법령 표기 등을 정비

2. 비용 발생 요인

- 도세 감면조례 적용시한 연장으로 도세 감면혜택 3년간 지속 추진
- 감면 대상자에 대한 도세 감면액 발생

3. 관련조문

-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 제2조)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안 제3조)
-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안 제4조)
- 지역특산물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안제5조)
- 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안 제6조)
-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안 제7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안 제8조)
- 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안 제9조)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안 제10조)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안 제11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감면대상 물건 취득시 감면혜택이므로 비용(예상액) 추계가 어려움
- 2010년 ~ 2012년 8월까지의 감면액 등을 기초로 감면예상액 추계

나. 추계 결과

《 연도별 감면예상액 》

(단위:백만원)

감 면 항 목 별	감 면 평균액	감면 예상액(추계)			비고
		2013년	2014년	2015년	
계		992	348	348	
①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15	15	15	15	
②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25	25	25	25	
③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추계제외
④ 지역특산물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추계제외
⑤ 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				추계제외
⑥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59	59	59	59	
⑦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247	247	247	247	
⑧ 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1,646	41	1	1	
⑨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1,410	604	0	0	
⑩ 자동계좌이체 납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1	1	1	1	

※ ①번, ②번, ⑥번, ⑦번, ⑩번은 감면 연평균액으로 추계

※ ⑧번은 도시가스 사업계획 중 부동산 취득예정 자료를 참고로 추계

※ ⑨번은 기업도시내 2013년 건축물 준공예정 및 토지취득 감면예상액을 참고로 추계

다. 재원조달방안

- 세제감면을 통한 간접적 지원으로 예산을 별도로 수반하지 않음
- 감면예상액은 도세 목표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것임
 - ※ 2013년도 감면예상액은 2013년 도세 목표액(안) 6,887억원 대비 0.1%
- 앞으로 도세 세입현황을 수시로 분석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 및 납기내 납부 홍보 강화 등으로 세수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생략 (추계 결과로 같음)

6. 작성자 : 행정국 세정과 과장 김 희 수